

제 1398 호
1988. 2. 1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강 용 래
편집인 : 공 보 관 서 정 희
전 화 : 731-6111~3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출판실
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95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3
◎ 공 고	
제 100 호 : 주택개발재개발사업 (용온 5-4 구역) 공사완료	3
제 102 호 : 도매안입법예고	4
제 104 호 : 제 2 종전기공사업명업정지	5
제 105 호 : 공공하수도사용계시공고및관제도면공람	5
제 10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안공람	10
제 110 호 : 재개발사업 (무교구역제 1 지구) 시행인가변경윤위할공람	10
제 112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	11

(이면계속)

일											
월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처로서와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17 호 : 옥동신사가지중심지구중일단의주택과조성사업지구도시 설계 (안) 재공람.....	11
제 119 호 : 주택개발재개발 (구로 4 구역) 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.....	12
제 120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.....	13

㉡ 사 령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95 호

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5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 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 사업
2. 사업주체: 라이프주택개발㈜
대표이사 조 내 벽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 택지개발지구 134 보러
나. 대지면적: 30,096㎡
다. 건축연면적: 69,376㎡
라. 규모: 아파트 15층 6동 686세대(상가 3층 1동 및 부대부리시설)
4. 사업시행기간: 1988년 2월~
1989년 6월 30일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00 호

홍은 5-4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공사완료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596 호(’86. 3. 19)로 사업시행 인가된 홍은 5-4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공사가 준공 처리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한다.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장

공 고 내 용

- 가. 사업명칭: 홍은 5-4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자: 서대문구 홍은 1동 123-8 홍은 5-4 구역재개발조합장 유 석 만
- 다. 사업기간: 1986. 8. 18~1989. 2. 29
- 라. 사업계획에 의한 공중별 공사 내역

○ 건축시설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— | 규모: 아파트 3~12층 1동 181세대, 상가 지상 2층 1동 |
| | 건축면적: 1,468.52㎡ |
| | (전체율 25.63%) |
| | 건축연면적: 16,317.92㎡ |
| | (용적율 248.72%) |

○ 토 지

대지면적 : 5,729 m²
 공공시설(도로및녹지) : 2,812.7 m²
 계 : 8,541.7 m²

마. 사업비 개원별 내역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02 호

조 례 안 입 법 예 고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 조 및 동
 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의한 교통
 영향평가제의 적용을 위하여 도심 및
 외곽지역 구분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
 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
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
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
 과 같이 공고한다.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 장

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(안)
 입법예고

1. 제정취지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 조 및
 동법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의거
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를 도심과 외
 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규정
 하고 있어 이에따라 도심지역을
 조례로 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 (도심및외곽지역 구분)

가. 도심지역

- 4 대문 주변지역 : 사직로, 을곡로
 왕산로, 다산로, 왕십리, 퇴계로,
 의주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
 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
- 신촌지역 : 정의선천도, 정의선철도
 와 대흥로물 잇는도로, 대흥로, 용
 산선천도, 양화로 및 연희로를 경
 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
 인접하는 외곽부지
- 영동로지역 : 여의도 및 경인로,
 선유로, 당산로, 노원길을 경계로
 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
 하는 외곽부지
- 영동지역 - 압구정로, 언주로, 역삼로,
 효령로, 반포로, 서초로, 경부고속도로를
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
 인접하는 외곽부지
- 잠실지역 : 올림픽로, 석촌호수길,
 삼각사길, 잠실길, 올림픽로, 송파대로
 신천동 7 번지 11 호, 7 번지 8 호, 11
 번지 7 호를 잇는도로 올림픽로,
 위례성길, 백계고분로를 경계로하는
 내부지역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
 외곽부지
- 천호지역 : 선사로, 구천면길, 천호
 동 421 번지와 성내동 453 번지를 잇
 는도로, 둔촌로, 성내동 415 번지와
 성내동 108 번지를 잇는도로, 뚝남
 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경계
 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
- 청량리지역 : 제기로, 배봉로, 하정로,
 정릉천을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
 과 경계가로에 인접하는 외곽부지

1988. 2. 16 19-4

나. 외곽지역 :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

3. 의견제출

이 조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8. 3. 1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: 교통기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. 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상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기획과(735-6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04 호

제 2 종전기공사영업정지

전기공사법 제 29 조제 2 항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법법을 다음과 같이 영정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.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업 체 명	소 재 지	대표자	영 정 정 지 기 간
782	명진전기 산업사	영등포구 영등포동 2 가 16-2	김천호	1988.2.10~1988.3.9 (1월)
788	동원전선공사	" 571-3	홍성구	"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05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

1.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(종로구청장)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공공하수도 설치(변경)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

공람한다.

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아제 한다.
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8. 2. 15

서울특별시장

19-6 제 1398 호

시

보

1988.2.16

- 공고 및 공람개요 -

1. 산출개시년월일 : 별첨조서참조
2. 배수구역 : 별첨조서참조
3. 사용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:

창신동 633 번지의 2 개소 하수도 및
포장공사의 39 개소

4. 사용은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
합류식 또는 분류식 구별 : 합류식

공 고 및 공 람 개 요

순번	위 치 (공사명)	시 설 개 요	산출개시 년월일	배수구역	구 별
1	창신동 633 번지의 2 개소 하수도 및 포장공사	D = 600 $\%$ L = 120 m D = 450 L = 120 D = 300 L = 25	87. 5. 15	청계천	합류식
2	송진 2 동 658-2-653 간 하수도정비공사	D = 700 $\%$ L = 14 m D = 600 L = 72.5 D = 450 L = 205 D = 400 L = 140 D = 300 L = 321	"	"	"
3	송진동 61 번지의 2 개소 하수도정비공사	D = 700 $\%$ L = 60 m D = 450 L = 205 D = 300 L = 247.5	87. 5. 12	"	"
4	장신 2 동 550 번지의 1 하수도정비공사	D = 450 $\%$ L = 315 m	87.	"	"
5	중로 6 가 1-11- 송진 18-61 간 하수도 및 도로상비공사	암거 (0.5 $\times$ 0.5) L = 320 D = 600 L = 72 D = 450 L = 110	87. 5. 17	"	"
6	구학동 46 지개 도로정비공사	D = 450 $\%$ L = 175 D = 300 L = 155	87.	육 천	"

순번	위 치 (공 사 명)	시 설 개 요	사용개시 년월일	배수구역	구 결
7	부암동 166 번지 하 수도정비	암거 (2.5×2.5) L = 115	87. 5. 30	홍제천	합류식
8	원서동 70-233 번지간 하수도 정비공사	암거 (1.5×1.5) L = 180 D = 600 % L = 120 m	87. 5. 28	정제천	"
9	배화동 163-1 번지의 1 하수도정비공사	D = 600 % L = 62.5 m D = 450 % L = 238 m D = 300 % L = 135	87. 5. 5	"	"
10	종로 6 가 228 주변 하수도정비공사	D = 800 % L = 64 m D = 700 % L = 128 m D = 600 % L = 200 m D = 450 % L = 75 m D = 300 % L = 58 m	87. 5. 30	"	"
11	신문로 1 가 81-60번지 간 하수도정비공사	D = 450 % L = 129 m D = 300 % L = 158 m	87. 5. 18	"	"
12	구기동 35 번지의 1 하수도정비	D = 600 % L = 35 m D = 450 % L = 90 m D = 300 % L = 25 m	87. 5. 27	홍제천	"
13	평창동 66-92 주변 도로정비공사	D = 450 % L = 72.5 m	87. 6. 15	"	"
14	낙산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	D = 600 % L = 60 m D = 450 % L = 132.5 m	87. 5. 28	정제천	"
15	성대앞의 1 개소 도로정비공사	D = 800 % L = 130 m D = 450 % L = 45 m	87. 9. 14	"	"
16	신영동 214 주변의 1 도로정비공사	D = 450 % L = 190 m	87. 6. 15	홍제천	"
17	신영동 166-150 의 1 개거복개공사	암거 ($2.5 \times 2 \times 2$ 편) L = 100 " ($1.8 \times 2.45 \times 1$ 편) L = 182	87. 8. 10	"	"

19-8

제 1398 호 시

보 1988.2.16

순번	위치 (공사명)	시 설 개 요	사용개시 년 월 일	배수구역	구 별
18	효제동 173 번지의 2 도로포장공사	D = 600 % L = 310 m D = 450 % L = 795 m	87.12.31	청제천	합류식
19	사직동 49 주변의 1 도로정비공사	D = 450 % L = 440 m	87.	"	"
20	청장단지내 도로포장 공사	D = 450 % L = 230 m	87. 7.28	홍제천	"
21	보성고교 진입로 확 장공사	D = 450 % L = 290 m	87.12.28	청제천	"
22	승인동 234 주변 하 수도정비공사	D = 900 % L = 25 m D = 300 % L = 28.3 m	87. 6.11	"	"
23	청운동 3 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	D = 300 % L = 100 m	87.	"	"
24	부암동 329 번지의 1 하수도정비공사	D = 300 % L = 155 m	87.11.19	홍제천	"
25	명륜 3 가 1 의 3 개소 하수도정비공사	D = 450 % L = 197 m D = 300 % L = 203 m	87.11.12	청제천	"
26	종로 6 가 239 번지 일 대의 4 하수도정비공사	D = 600 % L = 142 m D = 450 % L = 178 m D = 300 % L = 39 m	87.11.23	"	"
27	승인 1 동 52 의 2 하수도정비공사	D = 700 % L = 12.5 m D = 450 % L = 115 m	87.11.17	"	"
27	승인 1 동 52 의 2 개소 하수도정비공사	D = 300 % L = 96 m	87.11.17	"	"
28	구기동 117 번지의 1 하수도정비공사	D = 450 % L = 117 m	87.	홍제천	"
29	홍제동 55 번지의 2 하수도정비공사	D = 800 % L = 42 m D = 600 % L = 40 m D = 450 % L = 182 m	87.11.31	"	"

제 1398 호 시

보 1988.2.16 19-9

순번	위 치 (공사명)	시 설 개 요	사용개시 년 월 일	배수구역	구 비
30	원서동 150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	D=600 % L = 50 m D=450 % L = 270 m D=300 % L = 285 m	87. 9.28	청계천	합류식
31	송인 2 동 227 번지의 4 하수도정비공사	D=450 % L = 40 m D=300 % L = 196 m	87. 11. 4	"	"
32	명륜 3 가 1 외 1 개소 드로정비공사	D=450 % L = 115 m	87.	"	"
33	신교동 2 번지의 1개소 하수도 및 난간설치 공사	D=400 % L = 95 m	87. 9.10	"	"
34	종신동 5 번지일대의 1 하수도정비공사	D=600 % L = 56 m D=450 % L = 165 m D=300 % L = 48 m	87. 11. 23	"	"
35	종로 5 가 246 번지일대 하수도정비공사	D=600 % L = 103 m D=450 % L = 32 m D=300 % L = 32 m	87. 7.23	"	"
36	내수동 95 번지 하수도정비공사	D=300 % L = 100 m	87. 10. 2	"	"
37	창선 1 동 142 외 2 개소 포장 및 하수도공사	D=600 % L = 43 m D=450 % L = 100 m D=300 % L = 74 m	87. 11. 13	"	"
38	가회동 16 외 4 개소 포장하수도공사	D=450 % L = 45 m	87. 11. 2	"	"
39	혜화동 20 주변 하수도포장공사	D=450 % L = 145 m D=300 % L = 115 m	87. 11. 27	"	"
40	통인동 31 주변 하수도정비공사	D=600 % L = 175 m	87. 9. 5	"	"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09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안공람

1.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
게 보인다.

2.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람장소 - 구로구청 도시정리과
나. 공람기간 - '88. 2. 12 - '88. 2. 26
(14 일간)

다. 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안
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4	4	28	구로구구로동 469-1	중로 1류 220	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10 호

무교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
변경율위헌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69 호(83. 5. 16)로 사업시행인가된 무교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박만중씨가 도시재개발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(시행기간연장) 신청을 하였는바,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2.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해 줄음한다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

가. 변경내용

- 사업시행기간 연장

· 가정 : 83. 5. 16 - 88. 2. 28

· 변경 : 83. 5. 16 - 90. 6. 30

○ 기타 변경 없음.
나. 공람기간: '88.2.12 ~ '88.3.12
(30일간)
다.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재개발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12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공람

1. 서울특별시가 결정·저적승인한 다
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
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

가. 사업개요

사업시행처	사업종류및사업명칭	구 모	착공	준공	결정고시일자	착공고시일자
창동516외 5번지	도시계획사업(도로) 신화국민학교 진입로 포장공사	B=10m L=200m	88.2	88.5	서울고시 제28호 '74.3.15	서울고시 제28호 '74.3.15

나. 사업의시행자: 서울특별시청
다. 사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: 생략
라. 위치도 및 계획면도: 생략
마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바. 공람장소: 도봉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
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
과에 문의하시기 바람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

목동신사가지중심지구중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도시설계(안)재공람

1.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

조 2항 및 동시제정 제27조 2
규정에 의거 관제서류를 공람한다.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
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해
서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제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
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
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고
쳐,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
공람공고 기간내 구청장소로 제출하
시기 바람.

1988. 2.16

서울특별시청

종합계획으로 수립된 목동신사가지 중
심지구의 도시설계(안)를 서울특별시공
고 제168호('86.6.29)로 공람공고
를 실시한 구역중 일부가 도시계획
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으로
변경되어 그에 따른 환경계획에 준
하여 도시설계(안)를 작성하고, 건축법
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관제서류를
서울특별시, 목동지구개발사업소, 양천
구청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
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8. 2.16

서울특별시청

가. 대상구역			
구	분	위	치
목동신시가지 중심지구 중 일단의 주택지 조 성사업지구		양천구 목동 406 번지, 신정동 85 번지 일대 (목동 신시가지 중심지구 11, 12, 13 블록)	면적 82,295 평
나. 도시설계 시행지침 내용		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516호(86.7.24)로 사업계획 결정된 주택개발 재개발 구로제 4 구역토지 및 건물등의 소유자들로 부터 주택개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관제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	
○ 대지에 관한 사항 · 전벽개발, 합병개발, 대지의 분할과 합병 ○ 건축물에 관한 사항 · 용도, 높이, 건축한계선, 벽면지정선 ○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· 주차 출입구, 공공공지, 공공조경 ○ 도로에 관한사항 · 보행자 전용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유개보행도로		2. 주택개발 재개발 구로제 4 구역안의 토지, 건물등의 소유자와 기타 당해 지구재개발사업의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	
다. 공람기간 : 88.2.16, 88.3.16 (30 일간)		1988. 2. 16 서울특별시 강	
라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, 건축지도과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건축공사와 양천구청 건축과		- 공람공고내용 -	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119 호		가. 공람기간 : 1988.2.15-1988.3.15 (30 일간)	
주택개발재개발구로제 4 구역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		나. 공람장소 : 구로구청주택과 및 구로제 4 구역 조합사무소	
1. 전설부고시제 512 호(85.11.22)로		다. 의견서제출장소 : 구로구청 주택과	

라. 허가신청의요지

- 1) 사업 명칭 : 구로제 4 구역 주택개발사업
- 2) 시행구역 :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 6동 125 번지의 162 필지
- 3) 시행면적 : 14,805 제곱미터
- 4) 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15 개월
- 5) 신청인 : 구로제 4 구역 주택개발사업조합설립위원회
대표 최복용
- 6) 시행계획 : 정관 및 설계도서생략
[주택건립규모 : 아파트 8, 15층 2동
정형변가구수 : 23명형 119세대
24명형 83세대
29명형 120세대
34명형 105세대]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120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공람

1.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체승인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계획 도시계획법 제 25 조 2항 및 동법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건축서류를 공람한다.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세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 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8. 2. 16

서울특별시 공

가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및사업명칭	지	면	축	공	현	공	결	정	고	시	지	정	고	시
수유 4 동 572-568 번지	도시계획사업(도로) 수유 4 동 572-568 간 도로개설공사	B = 4-6 m L = 110 m						88.2	'38.5	서울고시 제 3 호 69.1.19		서울고시 제 3 호 69.1.18			

나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
다. 사용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토지조서
라. 위치도 및 계획정면도 : 생략
마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바. 공람장소 : 도봉구청 토목과 및
건설관리과
사. 기타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
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사 련

◎ 1988 년 2 월 15 일 자

명 제 46 호

성 명	발 경 사 항	현 부 서
강 성 구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3 호봉을 급함. 성동구 군무를 명함.	신 규
전 병 달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2 호봉을 급함. 노원구 군무를 명함.	"
황 희 목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2 호봉을 급함. 노원구 군무를 명함.	"
김 태 춘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1 호봉을 급함. 구로구 군무를 명함.	"
강 재 신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1 호봉을 급함. 도봉구 군무를 명함.	"
심 현 건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2 호봉을 급함. 마포구 군무를 명함.	"
박 예 리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1 호봉을 급함. 송파구 군무를 명함.	"
조 정 숙	지방별정직 7 급상당에 임함. 1 호봉을 급함. 중포구 군무를 명함.	"
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직
조 애 욱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신 규
정 영 자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노원구 근무를 명함.	.
이 국 진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2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.
김 종 숙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동작구 근무를 명함.	.
이 광 영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은평구 근무를 명함.	.
이 순 복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.
한 정 욱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	.
유 미 령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종로구 근무를 명함.	.
정 철 수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.
유 재 덕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	.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
	2호봉을 급함. 강동구 근무를 명함.	
김현숙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구로구 근무를 명함.	신구
국영자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8호봉을 급함. 노원구 근무를 명함.	"
김미영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성동구 근무를 명함.	"
김진학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2호봉을 급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"
김순덕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용산구 근무를 명함.	"
이수경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중구 근무를 명함.	"
홍숙자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4호봉을 급함. 성북구 근무를 명함.	"
전경미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"
차미경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양천구 근무를 명함.	"

성 명	발령사함	현부서
정 상 진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은평구 근무를 병함.	신 규
김 영 화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성북구 근무를 병함.	.
장 용 천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영등포구 근무를 병함.	.
김 미 해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마포구 근무를 병함.	.
김 숙 경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강동구 근무를 병함.	.
김 복 숙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병함.	.
문 경 국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서초구 근무를 병함.	.
유 창 욱	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성북구 근무를 병함.	.

◎ 1988년 2월 12일자

별제 49 호

성 명	발령사함	현부서	직 급
박 순 철	보건사회국장에 경임함.	개무국장	이사관

명제 51 호			
순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홍 승 통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, 2 호 (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조례 제 12 조관련)에 의거 "해 임"에 처함.	전자계산소	지방별정직 6 급 상당
박 춘 근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"거책"에 처함.	강 동 구	지방행정주사보
위 훈 량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"감봉 1 월"에 처 함.	부녀청소년과	지방행정서기
박 성 균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"감봉 3 월"에 처함.	전자계산소	지방행정서기

◎ 1988 년 2 월 22 일자

명제 52 호

성 명	발 명 부 서	발령호봉	발 명 직 급	비 고
정 순 양	강 남 구	4 호봉	지방전력기원보시보	
한 일 현	등 작 구	4 "	"	
박 은 섭	구 로 구	3 "	"	
홍 범 표	서 대 문 구	3 "	지방토목기원보시보	
정 진 근	은 명 구	4 "	"	
전 인 수	강 서 구	3 "	"	
성 종 곤	마 포 구	4 "	지방임업기원보시보	
장 용 수	강 동 구	4 "	"	
장 영 빈	노량진수원지사무소	4 "	지방전기기원보시보	
현 상 주	김포수원지사무소	4 "	"	
김 현 돈	한강관리사업소	2 "	"	
황 선 무	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	4 "	"	

◎ 1988년 2월 13일자			별제 53호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송세근	교통기획과파견 (88.2.13-12.31)	종합건설본부	지방행정서기
유계룡	"	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	"
송의섭	"	차량정비사업소	"
김병직	"	보건환경연구소	지방행정서기
김효환	"	영등포수원기사무소	"
최경수	"	죽도수원기사무소	"
홍순동	"	전자제안소	지방행정직 8급 장당

◎ 공무국의 여행명명사항

여 행 자			여행목적	여행국	여행기간	경비
소속	직위(직급)	성명				
투자 관리관	투자관리관 (지방부이사관)	김주일	• 제 4 회 동경국제 금융회의 참석 • 지방재정자립 및 재원에 관한 자 료 수집차	일본	88.2.22- 2.29 (8일간)	서미 USS 1099

서울특별시장